◉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28호

과태료 부과 처분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4월 22일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	업종 [등록번호]	대표자명	소재지
㈜피앤제이푸드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60007183호]	박*용	경기도 김포시 흥신로 220-29 나동 1층
주식회사 키니톤코리아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80006049호]	이*종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51(농서동), 지하1층 27호
비알씨(BRC)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80006964호]	강*희	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, 대원빌딩304호
㈜세화물산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00309193호]	강*임	경기도 평택시 이대원로 266-1(1층)
주식회사 아이엘엠씨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80006220호]	hosseini d*hnavi s*yedmojtaba	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3 (송도동), 5층 508호
주식회사 제이비지트레이딩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00190092호]	윤*혁	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6 (신흥동3가), 205호
형제식품	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[제20172820981호]	LIZ*IW*N	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6 (신흥동3가) 희창씨앤에프 에이동 202호

2. 처분사항

○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(납부기한: 2022. 5. 23.까지)

3. 처분사유

○ 2020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

4. 근거법령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제17조제1항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[별표2] 2.개별기준 가목

5. 기타사항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,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

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미납 시 불이익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	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다.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	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

○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* 처분 관련 문의: 운영지원과 추명희(☎ 02-2110-8016, cmhee@korea.kr)
운영지원과 장효진(☎ 02-2110-8024, jhj8817@korea.kr)

* 납부 관련 문의: 운영지원과 심미연(☎ 02-2110-8017)